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6건 의결 -

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16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3건),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530)
		담당자	서기관	김보균 (02-2100-2841)
			사무관	김예빈 (02-2100-2859)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진호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2-2100-2975)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7160)
		담당자	팀 장	심은섭 (02-3145-7162)
<공동>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이성욱 (02-3145-712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6건)

①~⑩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3건),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손해보험, 매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회사 본사 및 영업점 임직원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합니다.

※ 업체별 신규 지정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 **Success Factors**(임직원 인사관리), **My HR**(임직원 인사관리), **MFS360**(내부관리자 성과관리)
- ▶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손해보험, 매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 **M365**(업무협업)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나, 내부업무용 시스템(또는 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전략적인 인재 경영을 실현하여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업무협업 측면에서 협업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지정 기업들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허용된 업무 범위(업무 종류, 데이터 범위, SaaS 서비스 종류 및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내에서 SaaS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처리대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외

또한,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내부 단말기, ②내부망↔SaaS 연계, ③SaaS 관리, ④SaaS 운영정책 관련 보안대책 수립 등

[향후 일정]

'24년중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